

(사)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임원선출의 회원 직접선거제를 위한 연구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조 (명 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(사)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임원선출의 회원 직접선거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로 “직선제 연구위원회”(이하 위원회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 위원회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그 제도의 개선을 연구하여 연맹에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- ②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장이 임명하고, 위원, 고문 및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, 고문, 자문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연맹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추천한다.
- ⑤ 위원회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, 위원,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목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위원회의 해산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업무)

- ① 위원회는 연맹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.
 1. 정관 및 제 규정의 관련 사항 정비 검토
 2. 직접선거를 위한 정회원 선거권인명부 작성
 3. 로드맵 작성
 4. 총회 및 임원선거 방법 검토 – 홈페이지, 휴대폰, 엽서, DM 등
 5. 정회원 의견수렴
 6. 기타
- ②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 및 검토되고 최종 수렴된 의견을 연맹 이사회에 권고한다.

제 5 조 (위원회회의)

- ① 위원회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 6 조 (분과위원회)

- ① 위원장은 관련 분야별 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이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. (2019년 10월 12일 이사회의 의결 시행)